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11월 4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정책기획팀 팀장 임기성(044-203-4610), 사무관 강환일(4613)

규제완화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물꼬 튼다.

-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성 높이고, 진입장벽 낮춘다 -

- 「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개정안 공포·시행 -

□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**단계적 개발* 허용 대상면적이 확대**되고, 개발사업시행자의 **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이** 줄어든다.

* 단계적 개발: 단위개발사업지구를 일정면적으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

○ 또한, 경제자유구역 **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**도 **개발사업에 참여**할 수 있어, 침체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·규칙」 개정안이 **11. 4. 공포·시행**했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없거나,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는 **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을 활성화**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.

□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,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을 **기존 330만㎡에서 200만㎡로 완화**해, 개발사업시행자의 **초기 과도한 투자부담을 완화**했다.

○ **대규모 단위개발사업지구**는 초기 자금부담 등으로 인해 **개발이 지연**될 가능성이 높고, **개발사업시행자 선정도 곤란**하다는 지적이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.

□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현행 **25%에서 10%로 인하**하여, **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**했다.

○ 개발이익 재투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**과도한 부담***으로, **민간부문**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 **주요 장애요인**으로 작용했다.

□ 경제자유구역 내 **토지소유자들**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**조합**도 **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**할 수 있도록 조합을 자격요건에 포함했다.

○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**재산권 행사가 제약**되고, 해당 지구의 **개발이 지연**됐다.

□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**개발이 신속하게 추진**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**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**에서 제외되는 도로너비를 기존 12m에서 **25m로 확대**했다.

□ 이번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으로 **미개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이 보다 원활히 추진**할 것으로 보인다.

○ 박순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"이번 개정안은 **경제자유구역청 건의사항**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, **미개발 사업지구**에서 개정효과가 조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"라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강환일 사무관(☎ 02-2110-38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